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. 11. 30.

행정재무위원회
전문위원 장영교

1. 제안요지

- 가. 의안번호: 제1692호
- 나. 제출자: 성동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. 11. 16.
- 가. 회부일자: 2021. 11. 18.

2. 제안이유

현재 우리 구의 중학교·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(안 제4조)
- 나. 지원금액 고려 기준에서 교복구매 평균가격을 삭제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교육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10. 7. ~ 10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안취지 검토

- 본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의 중학교·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4조에서
 -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하였고
- 안 제5조에서
 - 지원금액 고려 기준에서 교복구매 평균가격을 삭제하였음
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추진할 수 있고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됨

- 입학준비금이란 무상 교복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중·고 신입생(학부모)에게 제로페이 상품권을 지원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(의류, 스마트기기)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
- 자치구와 서울시, 서울시교육청 협의를 통해 그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리고 재원부담을 서울시:교육청:자치구가 각각 3:4:3으로 하기로 계획함
- 이에, 안 제4조에서 현재 지원대상이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
- 안 제5조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교복구매 평균가격과 관계없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정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 추진사항으로 학생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가계 교육비 절감 및 온라인학습 환경 확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조성은 물론 청소년 교육복지의 공정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< 관계법규 >

붙임 1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붙임 2

「교육기본법」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